#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88호 2023. 2. 13.(월요일)

	조	례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 하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不問題 不問題 可用	제2543호 제2544호 제2545호 제2546호 제2547호 제2548호 제2549호 제2550호 제2551호 제2552호 제2553호 제2553호 제2555호	하동군 청년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 • • • • • • • • • • • • • • • • • • •	95280345680
	<u> 충</u>	령			
	, -	-	제389호 제390호	하동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 • • • • 4'하동군 민방위경보단말 운영 규정 일부개정조례 • • • • 5.	
	고	시			
00000000	하동군 하동군 하동군 하동군 하동군 하동군 하동군	고시 고시 고시 고시 고시 고시 고시	제2023-15호 제2023-16호 제2023-17호 제2023-20호 제2023-21호 제2023-22호 제2023-24호 제2023-27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 • • • • • • • 56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고시 • • • • • 56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 • • • 66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 • • • • 66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고시 • • • • 66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 • • • 66 장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 • • • 66 장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 • • • 66 장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 • • • 66 장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 • • • 66 장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 • • • • 66 장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 • • • • • 66 장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 • • • • • 66 장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 • • • • • 66 장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 • • • • • • 66 장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 • • • • • • 66 장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 • • • • • • 66 장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 • • • • • • • • 66 장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 • • • • • • • • • • • • • • • • •	8 9 0 2 3 4 5 6
	입법여	고			
0 0 0	하동군 하동군 하동군 하동군	공고 공고 고고 고고	제2023-193호 제2023-194호 제2023-215호 제2023-216호	. 하동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6.6. 하동군 하동국악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7 6.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 운영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 • 8.6. 하동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 9 6. 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 • 9 6.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0 0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6 4 0 6

#### 일반공고

○ 하동군 공고 제2023-180호 2023년도 전략작물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 • • • • • 117

ই					
람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2023년 2월 13일

# 하동군수 하

하동군 조례 제 2543 호

####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청년정책 사업 추진)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과 권익증진, 그 밖에 역량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1.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비용 지원
  - 나. 교통, 보건, 안전 등 생활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 다. 청년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취업애로 및 사회, 경제, 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 나. 청년 일자리를 위한 청년의 적성 탐색 및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사업 다. 창의적, 전문적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지원

사업

- 3. 고용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구직자의 직업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사업
  - 나. 청년 일자리 불일치 해소 대책의 수립 및 시행 사업
  -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
  - 라. 청년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청년근로자의 권리구제 지원 사업
- 4.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 나.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 지역 청년문화·예술인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
- 5.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사업
  -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홍보 사업
-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의 제목 "(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행·재정적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ヹ

####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14조(청년정책 사업) 군수는 청년정 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 제2호의 청년정책의 주요사항과 연 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4조(청년정책 사업 추진) 청년의 주 거와 생활안정과 권익증진, 그 밖 에 역량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 다.
  - 1.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환경개 선 및 주거비용지원
    - 나. 교통, 보건, 안전 등 생활전 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 다. 청년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취업애로 및 사회, 경제, 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
    - 나. 청년 일자리를 위한 청년의 적성 탐색 및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사업
    - 다. 창의적, 전문적 우수 인재 양 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 영 지원 사업
  - 3. 고용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구직 자의 직업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사업
- 나. 청년 일자리 불일치 해소 대 책의 수립 및 시행 사업
-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 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 업
- 라. 청년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 선과 청년근로자의 권리구제 지원 사업
- 4.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 나.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 지역 청년문화·예술인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
- 5.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 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사업
  -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홍보 사업
-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

원) 군수는 청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제16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 제16조(행·재정적 지원 등) ① 군수 는 제14조에 따른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 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 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13일

하동군수 하



하동군 조례 제 2544 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 [별표 1]

#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2항 관련)

(세3소세4성 원원)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출산장려금	<ul> <li>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부모 중 1명만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 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li> <li>나. 분할지원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과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li> </ul>	·둘째아이 1,100만원 ·셋째아이 1,700만원 ·넷째아이 이상 3,000만원 (단, 첫째아이는 월10만원씩 만2세까지			
2. 출산축하용품	제1호의 지원대상과 동일함	5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3. 쌍둥이 이상 등 출산 축하금	제1호의 지원대상과 동일함	1회에 한하여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이상 200만원 1회에 한하여 다섯째아이 500만원 출생순위 증가에 따라 500만원 씩 추가 지급(단 부모와 자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4. 다둥이 안전보험	가. 둘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월 3만원 이내 (단, 보험심사 후 가입 결정)			
5. 영유아 양육수당	가. <b>둘째이이 이상</b> 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u>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u> 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u>부모와 2명 이상 자녀</u> 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u>둘째아이 이상 자녀</u> 를 둔 사람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월 10만원			
6. 임산부 철분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 또는 보건 지소에 임산부로 등록한 임신 5개월부터 출산 전 까지의 임산부	6개월분 철분제			
7. 태아염색체 검사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 또는 보건 지소에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중에서 태아의 유 전성질환, 태아의 염색체이상 의심 등으로 태아 염 색체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소견)에 따라 태아 염색체검사를 실시한 임산부	60만원 이내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8.	산후조리비	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3 개월(180일) 이상 부모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산모	・산후조리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중 최대 100만원 - 다태아인 경우 1인당 50% 가산 지원 ・산후조리원 미이용시 최대 50만원
9.	건강관리지원사	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3 개월(180일) 이상 부모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이용하는 산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유형별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유형 '표준' 신청 시 본인부담금 전액 - 서비스 유형 '단축' 신청 시 '단축' 금액 - 서비스 유형 '연장' 신청 시 '표준'금액

#### [별표 3]

### 결혼장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2항 관련)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결혼장려금	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  - 여자의 경우 가임기(만 49세까지) 여성에게만 적용. 다만 다문화가정일 경우, 우리 군의 동종 사업 보조를 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한 때 지원 신청 가능	- 결혼당사자(부부): 600만원 (단, 3년간 200만원씩 분할 지급 하며, 지급 시기는 부부의 혼인신고 일이 속한 월에 지급한다.)

#### [별표 4]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2항 관련)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ul> <li>가. 지원대상 부부 모두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거주의 목적으로 하동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구입, 신축 하거나 임차를 위해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li> <li>・ 신청자 및 세대원 소유의 다른 주택 또는 임차한 주택이 없어야 함</li> <li>- 대상주택: 단독주택(신축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li> <li>・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가구</li> <li>나.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li> <li>・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주택 거주자</li> <li>・ 1가구 다주택 소유자</li> <li>・ 건축물대장에 미등재 건축물을 매매 또는 임차한 경우</li> <li>・ 배우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li> <li>・ 하동군 및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유사한 주택 관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li> </ul>	<ul> <li>· 지원금액: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 이내 이자(연 최대 3백만원 한도)</li> <li>· 지원횟수: 연 1회</li> <li>· 지원기간: 최장 3년</li> </ul>

#### [별표 5]

# 하동군 인구증대 시책별 소관부서 현황

(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시 책 명	소관부서	비고
	출산장려금	지역활력추진단	
	출산축하용품	지역활력추진단	
	쌍둥이 이상 등 출산 축하금	지역활력추진단	
	다둥이 안전보험	지역활력추진단	
출산장려	영유아 양육수당	지역활력추진단	
지원 	임산부 철분제	건강증진과	
	태아 염색체 검사비	건강증진과	
	산후조리비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	건강증진과	
	전입자 지원금	지역활력추진단	
	전입학생 지원금	지역활력추진단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지역활력추진단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	지역활력추진단	
과이기이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문화관광과	
전입지원 	전입자 팸투어	문화관광과	
	결혼식장 무료 대여	시설체육과	
	영농정착 보조금	지역활력추진단	
	영농기초기술교육	지역활력추진단	
	빈집정보 제공	도시건축과	
결혼장려 지원	결혼장려금	지역활력추진단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역활력추진단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13일

하 동 군 수 하



하동군 조례 제 2545 호

#### 하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동 군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하동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한 17개의 목표와 하동군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하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사회·환경 등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 1.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이 군정운영의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 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하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3. 군수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 4. 군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
  -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
  -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 야별 시책

- 5.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하동군 지속가능발 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 2. 제7조제1항에 따른 하동군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 ④ 군수는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군수는 관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해야 한다.
- ⑥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한 경우 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 2. 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 3. 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 4.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 5.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군수가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 1.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 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④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 부해야 한다.
-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군수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군수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

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 · 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를 시작한 날부터 1 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 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최종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 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 영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표"라고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지표의 효율적인 개발·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동군의 지속가능성을 2년마다 평가

해야 하다.

-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⑥ 그 밖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군수에게 제출한 후 공표해야 한다.
  -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 2. 지속가능성 점검 및 평가 결과
  - 3.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 제9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의 기능은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자문한다.
  -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 2.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 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군수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견청취 등) 군수 또는 위원회는 안건심의 시 필요한 경우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나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 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13일

하 동 군 수 하



하동군 조례 제 2546 호

#### 하동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군정의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하동군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및 진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하동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 1.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 2.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및 의견 제시
- 3. 군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자문단 산하에는 분과자문단을 둔다.
-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자문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 성(性)의 위원

-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자문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1. 대학교, 연구기관, 기업 등에 종사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 2. 정부투자 · 출연기관 등의 전 · 현직 관계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
  - 3.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
  - 이 풍부한 사람
  - 4. 그 밖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2.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 3.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
  - 4.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위원이 장기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보궐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분과자문단 운영) ① 자문단은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분과자문단은 자문을 희망하는 부서의 요구에 따라 군수가 위원 중에서적임자를 지명하여 구성한다.
- 제8조(회의) ① 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나 단장의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 ③ 분과회의는 자문을 희망하는 소관 부서장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개최하되, 필요시 자체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자문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 소집회의 이외의 서면, 방문, 전자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구분하여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 ② 전체회의의 간사와 서기는 각각 군정총괄 업무 부서장과 자문단 업무담당이 되며, 분과회의의 간사와 서기는 소관분야 업무담당과 업무담당자가 된다.
  - ③ 간사와 서기는 회의사무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10조(자문이행 및 의견청취 등) ① 단장은 제2조에 따른 자문단의 기능을 보

- 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군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할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대하여는 자문 단 활동을 포함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단장은 위원 또는 분과자문단에 특정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자문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 관련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다.
- 제11조(자문사항의 통보) 자문단에서 검토한 사항은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이를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료제출 및 협조) 군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누설금지) 자문단의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에 자문단의 활동을 통해 취득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14조(수당 등) ①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 및 관외 여비, 자문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0조에 따른 특정시책의 자문요구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수당 지급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디

#### [별표]

#### 수당 등 지급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액
제8조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	1회당 20만원 이내
회의참석 관외여비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름
제10조에 따른 자문수수료	1건당 50만원 이내(1매당 15,000원)
제10조에 따른 연구·조사 소요 실비	정책의 연구 및 조사 활동에 실제로 드는 비용

#### ※ 자문결과물 기준

- 표지를 제외한 본문 A4용지 1면 기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0, 머리말·꼬리말 15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당 A4 1면으로 산정
-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13일

하 동 군 수 하 승



하동군 조례 제 2546 호

#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경상 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89에 둔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65세"를 각각 "60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별지][별지 제1호서식]

#### 하동군 노인ㆍ장애인 종합복지관 수탁 신청서

	법 인 명				대표자	(남/여)
-1 -1 -1	소 재 지				전화번호	
신청인	설립일자			2	수입재산 및 연 수입	
	재산내역	고정자산			유동자산	
위탁운영기간		20	0		. ~ 20 .	
기 타 (법인의 설립 목적을 간단히 기재)						

위와 같이 「하동군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복지관 수탁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 : (인)

하동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 2. 수탁운영에 따른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추정) 1부.
- 3.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임원명단, 사용인감계 각 1부.
- 4. 법인이사회 회의록 1부.
- 5.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국가무형문화재 낙죽장 공방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13일

하 동 군 수 하 승



하동군 조례 제 2548 호

#### 하동군 국가무형문화재 낙죽장 공방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문화재의 전통기술종목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하동군 국가무형문화재 낙죽장 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하동군 국가무형문화재 낙죽장 공방"(이하 "공방"이라 한다)이란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의 전통기술종목 보전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공방은 하동군 적량면 서리 1543-2 일원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공방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낙죽장 전통기술의 전수교육 및 인재 양성
- 2. 낙죽장 관련 자료의 수집·전시 및 보존·관리
- 3. 수준 높은 작품 생산으로 지역의 낙죽문화 저변확대

- 4. 지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적 향상 도모
- 5. 그 밖에 공방의 건립 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① 군수는 공방을 직접 운영하거나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군수는 필요시 수탁자에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공방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공방의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서류와 시설 현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제8조(손해배상) 군수는 수탁자가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변경하 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 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 1. 공방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 2. 공방의 사업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3.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 4. 관리 및 감독에 따른 지시사항을 미이행하였을 경우
  - 5. 그 밖에 군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하동군 사무의 민 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하동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13일

하동군수 하승



하동군 조례 제 2549 호

#### 하동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 하동군 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하동군 하동읍 시장1 길 17 일원에 둔다.

제3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유아휴게실(수유·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착유)
- 5.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

부 칙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13일

하동군수 하승



하동군 조례 제 2550 호

#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 계

부 칙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13일

하 동 군 수 하 승

하동군 조례 제 2551 호

####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2.5퍼센트 이내"를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0조 중 "3.0퍼센트 이내"를 "5.5퍼센트 이내"로 한다.

#### 부 칙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13일

# 하 동 군 수 하 승



하동군 조례 제 2552 호

#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3조제5항제5호 중 "제8962부대 5대대장"을 "제8962부대 2대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국군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하며, 같은 항 제 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5대대 작전과장"을 "2대대 정보작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5대대"를 "2대대"로 한다.

10. 사천해양경찰서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2023년 2월 13일

# 하동군수 하승



하동군 조례 제 2553 호

#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하동군 여성민방위기 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주부민방위기동대"를 "여성민방위기동대"로 한다.

제2조 중 "주부민방위기동대"를 "여성민방위기동대"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주부민방위기동대"를 각각 "여성민방위기동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주부"를 각 "여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교육내용에는 성별·연령별·계층별·재해약자를 동반한 경우별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주부민방위기동대 주요 임무 (제9조제3항 관련)"을 "여성민 방위기동대 주요 임무 (제9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주부민방위기동대 업무분장표 (제9조제3항 관련)"을 "여성민 방위기동대 업무분장표 (제9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의 지급액의 숙박비(1야당)란 중 "30,000"을 "50,000"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부민방위기동대"를 각각 "여성민방위기동대"로 한다.

별지 제1호의1서식 중 "주부민방위기동대"를 "여성민방위기동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편성자 명부"를 "하동군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자 명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13일

# 하 동 군 수 하 승



하동군 조례 제 2554 호

### 하동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건설기계주기장 조성을 통한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의 설치 확대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

- 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설치 · 운영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 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설치·운영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영주기장의 구조·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②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 야 한다.
  - ③ 군수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다.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 부 칙

관해서는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13일

### 하동군수 하승



하동군 조례 제 2555 호

### 하동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 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3.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

- 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어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등)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어업인 이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여 실질적인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하동군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 1. 정부정책 및 도정시책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자체 시책으로써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지원체계)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구성한 하동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농업소득분과위원회) 및 하동군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가 각각 대행하여 운영한다.

-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여성농어업인육성 시행계획
  - 2.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 3.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농어업인 정책
  - 4.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여성농어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6.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견청취 등) 정책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1. 여성창업농어업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 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어업관련 사업
  -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 동교육
- 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 4.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
-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수 있다.
- 제11조(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 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 3.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어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 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제12조(가족공동경영협약 장려) 군수는 가족원의 평등한 농어업경영 참여를 통해 밝고 건강한 가정과 여유 있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

을 장려할 수 있다.

- 제13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4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련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귀농·귀어·귀촌 및 외국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군수는 귀농·귀 촌 및 외국이주 여성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 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귀농·귀어·귀촌 및 외국이주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 2. 귀농·귀어·귀촌 및 외국이주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 3. 귀농·귀어·귀촌 및 외국이주 농어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 4. 귀농·귀어·귀촌 및 외국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기술 교육
  -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2023년 2월 13일

# 하 동 군 수 하 승

하동군 훈령 제 389 호

### 하동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

하동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규정"을 "하동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규정"으로 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으로 소집되어 하동군에 복무하는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사회복무요원"이라 함은 하동군에 배정되어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 2. "복무기관"이라 함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기관을 말한다.
- 3. "복무기관장"이라 함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의 장을 말한다.

- 4. "전담부서"라 함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를 말한다.
- 5. "주무부서"라 함은 복무분야별 업무담당 부서를 말한다.
- 6. "인도·인접"이라 함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기관의 인접관이 인수한 사회복무요원을 주무부서에서 인계인수하는 업무를 말한다.
- 7. "인도관"이라 함은 민방위업무담당 또는 복무기관장이 임명한 인계 업무처리담당 직원을 말한다.
- 8. "인접관"이라 함은 복무분야별 업무담당 또는 사회복무요원 담당공무원 등인수업무처리 담당직원을 말한다.
- 9. "사회복무요원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무부서 부서장이 지정한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지휘·감독) ①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자로서 복무기간 중 공무를 수행하며, 주무부서의 사회복무요원은 담당공무원이 복무수행을 위한 지휘·감독을한다.
  - ② 주무부서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상관리와 복무기록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전담부서에서는 월 1회 이상 주무부서의 지휘·감독사항 및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사항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복무기관장은 자체검사를 통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실태를 필요시 확인 감독한다.

### 제2장 필요한 인원의 배정요청

제4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 ① 사회복무요원의 필요한 인원 배정요청은

주무부서에서 사회복무요원배정요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지정기간까지 전담부 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담부서에서는 복무분야별 부서의 배정요청 사항을 취합하여,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 매년 지정기일까지 경남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집행) 전담부서에서는 사회복무요원 필요한 인원에 대한 보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을 집행한다.

#### 제3장 복무관리

- 제6조(인도·인접) ① 사회복무요원의 교육소집부대 인접은 전담부서에서 하고, 인수한 사회복무요원을 주무부서 인접관에 인도한다.
  - ② 인도·인접시에는 인도인접서 2부를 작성하여 전담부서와 주무부서에서 각 각 보관한다.
- 제7조(신상명세서 등 작성) ① 사회복무요원이 작성하여 제출한 신상명세서 정본은 주무부서에서, 복사본은 전담부서에서 각각 비치하여 관리한다.
  - ② 주무부서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찰 및 면담을 실시하여 신상명세서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매월말에 기록 정리하여 정·복사본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전담부서에서는 필요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찰 및 면담을 실시한다.
- 제8조(교육) ① 사회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사회복무요원의 신분, 근무시간, 복무기간, 임무 및 휴가, 병가, 보수와 전· 공상 등 복무단축 혜택에 관한 사항
  - 2. 신상이동 통지사항

- 3.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취소 및 현역병 의무부과 또는 복무이탈자 처벌사항
- 4. 사회복무요원의 준수사항
- 5. 성실복무서약에 대한 복무자세
- 6.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의 내용에 대하여 전담부서에서는 월 1회 이상 반복교육을 실시하여 야 하며, 주무부서에서는 연간 30일 이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관 리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근무지 지정 및 인사명령) ① 복무기관장은 복무분야별로 근무지를 지정한 인사명령을 하여야 하며, 경남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 복무분야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근무지 지정은 거주지에 가까운 거리의 근무지를 지정하되, 근무지가 지정된 사회복무요원은 그 근무지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거리가 가까운 근무지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무지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근무지 지정명령은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전담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회복무요원 신분증명서) ①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증을 발급하여 교부하고, 복무 시 항시 지니고 다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주무부서에서는 사회복무요원증을 항시 소지하고 있는지를 수시 확인하여 야 하며, 회수사유가 발생 시에는 즉시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① 업무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경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부득이한 경우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간외 근무를 명할 때에는 급식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사회복무요원은 매일 근무시간 시작 전에 출근하여 주무부서에서 임무를 부여받아야 하며, 근무종료 후에는 임무수행결과를 주무부서에 보고하고 퇴근하여야 한다.
- ④ 복무기관과 근무지의 거리가 원거리 지역으로 복무기관에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에게 출퇴근 근무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조치는 주무부서에서 하고 전담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주무부서에서는 출퇴근 근무관리를 위임한 때에는 복무기관에서 관리하는 복무일지 및 일일복무상황부 등을 주 1회 이상 확인 점검하고, 전담부서에서는 월 1회 이상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는 점검 확인날인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지각·조퇴 및 결근) 사회복무요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조퇴 및 결근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서에서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전담부서에 통지한다.
- 제13조(휴가·연가·병가 등) 휴가·연가·병가 등의 업무는 전담부서에서 처리한다. 제14조(호칭) 사회복무요원을 호칭할 경우에는 "000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 제15조(복무이탈자에 대한 처리) ① 복무이탈자가 발생한 때에는 주무부서에서 는 지체 없이 전담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고발대상자는 주무부서에서 고발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기일 내에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때에는 증명서류를 붙여 전담부서에 통지한다.
- 제16조(근무태만자 처리) 근무태만자 처리는 주무부서에서 조치하고, 관련서류 를 전담부서에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신상이동사항 통지) 주무부서에서는 신상이동사항이 발생 시 10일 이내 에 전담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사회복무요원 명부) 전담부서에서는 소속 사회복무요원 명부를 작성하여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9조(일일복무상황부 등 관리) ① 주무부서에서는 일일복무상황부 및 복무일지를 비치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매일 출근날인과 복무일지를 기록하도록 하고 매일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수임자가 확인한다.
  - ② 전담부서에서는 매월 출근사항 및 임무수행사항을 점검 확인한다.
- 제20조(복무기록표 작성유지) 주무부서에서는 보충역복무기록표를 1인 2매씩 작성하여 1매는 전담부서에서, 1매는 주무부서에서 각각 비치 관리하며, 매월 말에 기록사항을 대조 확인하고 정리하여 일치시켜야 한다.

#### 제4장 소집해제

- 제21조(질병 등에 따른 전시근로역편입) 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은 병무청 지정병원 또는 1개월 이상 입원치료 중이거나 치료 경력이 있는 병원의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주무부서 제출하고, 주무부서에서는 민원접수처리부에 등재하고 전담부서에 경유하여 경남지방병무청장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사회복무요원이 제출한 모든 민원서류는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 제22조(복무기간만료자 등의 소집해제) ① 전담부서에서는 경남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소집해제 처분자 명부를 받은 때에는 주무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전담부서와 주무부서에서는 사회복무요원 해제에 따른 모든 조치를 각각 이행하여야 한다.
- 제23조(보수지급) ① 사회복무요원의 월 보수는 주무부서에서 회계절차에 의거 매월 하동군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주무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여 야 한다.
- ③ 월 보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다.
- 제24조(사회복무요원의 실태조사) ① 전담부서 또는 감사부서에서 필요시 사회 복무요원의 실태조사를 한다.
  - ② 실태조사는 전담부서와 감사부서가 각각 또는 합동으로 실시한다.
- 제2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무 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이 규정의 모든 서식은 병무청 서식으로 한다.
  - ③ 주무부서에서는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과 이 규정을 병합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민방위경보단말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2023년 2월 13일

# 하 동 군 수 하 승



하동군 훈령 제 390 호

### 하동군 민방위경보단말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하동군 민방위경보단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싸이렌"을 "사이렌"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시설관리요원) ①수신단말 시설관리요원(이하 "시설관리요원"이라 한다) 에는 관할 읍면의 민방위 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시설관리요원은 경보장비 정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전단 중 "수신단말 시설관리요원(이하 "시설관리요원"이라 한다)"을 "시설관리요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민방위담당주사는"을 "민방위업무담당은"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관리요원은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군청 민방위업무담당자에 게 보고하고, 민방위업무담당은 이를 종합하여 안전총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선조치 후보고) 안전총괄과장은 군수 또는 지역군부대장의 국지적인 화생방경보가 발령되면 지체없이 도 통제소에 경보발령을 요청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즉시 경상남도 민방위경보업무담당과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보안관리) ①안전총괄과장은 자체경보시설에 대해 월1회 이상 보안진단을 실시하여 취약점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경보시설 출입문은 이중문으로 설치하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제한구역 표시를 하여야 하며, 외부침입 방지를 위해 시설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개소가 복구 지연시"를 "시"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 한다.

- 1. 고장구간 및 시설장비명
- 2. 고장원인 및 복구대책
- 3. 복구예정일시

제19조제1호 중 "안전관리담당주사"를 "민방위업무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하동군 고시 제2023 - 14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 31,

### 하 동 군 수

####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대전방길 44-13 외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1. 3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 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이동	도로명주	도로명고	ㄷㅋゖㅂ사시ㅇ		
구분	중인구도	エエおナエ	사유	소고시일	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00000101	00070010	대전바이되는 되어마으어로 바여		
호부여	양포리 506-1	대전방길 44-13		20230131	20070618	대전방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00000101	20000702	에져이 그소드크 기념		
호부여	안심리 226-1	구고속도로 524-3		20230131	20090702	예전의 고속도로 기념		
건물번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20230131	20090302	기차가 지나가는 굴다리가 위치하는 지역적 특성에 일련번호방식의		
호부여	광평리 2-4	굴다리2길 23		20230131	20090302	두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20220121	20070618	카나게 아기따 이고마으의 하치 해저사이 며치의 트르며에 비여		
호부여	상이리 1658-2	금남길 478-2	20230131		20070616	칼남재, 양지땀,왼골마을을 합한 행정상의 명칭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20220121	20090710	거나이 되브지엄은 이트 트크		
호부여	여의리 23-5	경서대로 1273-54	20230131		20090710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건물번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20230131	20000702	에저이 그소드로 기념		
호부여	안심리404-3	구고속도로 406-1		20230131	20090702	예전의 고속도로 기념		
건물번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20230131	20070618	공설운동장 앞을 지나가는 도로로 공공시설명을 반영		
호부여	신월리 1127-1	공설운동장로 504-20		20230131	20070616	중월군중정 싶을 시나가는 포도도 중중시설명을 반영		
건물번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20230131	20140701	옛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호부여	서리 산247	삼화실로 605		20230131	20140701	첫 시청으로 포도형 구역		
건물번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20230131	20070618	안심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호부여	백련리 564	안심길 82-61		20230131	20070618	한점이나는 자연막들이름 변형		
건물번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20230131	20090702	해저그여며/오조ㅗ다서며) 하요		
호부여	병천리 산43	옥단로 966-68		20230131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번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00000101	20000702	에저이 그소드로 기념		
호부여	송원리 51-411	구고속도로 934		20230131	20090702	예전의 고속도로 기념		

#### 하동군 제2023 - 15호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 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1. 31.

하 동 군 수

- 1. 허가(승인)번호 : 2017-53호
- 2. 허가연월일 : 2023. 1. 31.
- 3. 점·사용의 목적 : 진입도로
-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적량면 관리 960 (64m²)
- 6. 점·사용의 기간 : 2022. 10. 26. ~ 2027. 10. 25.
- 7.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145-1, 해관산업개발

#### 하동군 제2023 - 16호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고시

「하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홍수관리구역 안에 서의 행위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 31.

하 동 군 수

1. 하천의 명칭 : 화개천

2. 허가연월일 : 2022.06.24.

3. 점용자 :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648, 김경\*

4. 점용의 목적 : 가설건축물

5. 점용위치 : 화개면 용강리 190-7

6. 점용면적 : 19㎡

7. 점용허가 기간 : 2023. 1. 31. ~ 2028. 1. 30.

하동군 고시 제2023-17호

###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준점성과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 2. 2.

하 동 군 수

기준집	텀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점	평면	좌표	田 卫	소 재 지	설치일 (관측일)	표지	비고
명칭	번호	위도	경도	권엽	Х	Υ	<b>井</b> 卫	조세시	(관측일)	재질	비고 
지적도근점	W4544	35-57-32.56035	127-49-28.95669	중부	262861.91	275324.61	68.527	금성면 가덕리 산36	2023.01.03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45	35-57-21.34478	127-49-29.43837	중부	262824.56	275337.21	69.615	금성면 가덕리 산36	2023.01.03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46	35-57-29.19222	127-49-30.94773	중부	262758.53	275376.05	70.370	금성면 가덕리 산27-14	2023.01.03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47	35-05-54.3430	127-44-33.3095	중부	278266.99	267708.69	116.105	하동읍 두곡리 45-1	2023.01.0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48	35-05-53.5964	127-44-31.7279	중부	278243.68	267668.80	107.842	하동읍 두곡리 1609-5	2023.01.0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49	35-05-52.4418	127-44-29.8022	중부	278207.74	267620.29	102.243	하동읍 두곡리 49-4	2023.01.0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50	35-00-56.94728	127-47-21.70327	중부	269134.65	272046.30	30.043	고전면 신월리 52-5	2023.01.0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51	35-00-57.25940	127-47-25.39143	중부	269144.98	272139.77	51.348	고전면 신월리 산199-33	2023.01.0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52	35-00-55.83554	127-47-25.07296	중부	269101.02	272132.02	50.558	고전면 신월리 51	2023.01.0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53	35-00-56.90255	127-47-29.19863	중부	269134.77	272236.34	104.747	고전면 신월리 산199-49	2023.01.0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54	35-00-51.05528	127-47-24.11006	중부	268953.51	272108.79	95.217	고전면 신월리 산199-52	2023.01.0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55	35-08-25.1526	127-52-13.0992	중부	283009.00	279313.75	128.243	북천면 화정리 1563	2023.01.1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56	35-08-23.0438	127-52-14.9968	중부	282944.42	279362.36	124.587	북천면 화정리 1563	2023.01.1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57	35-08-20.5782	127-52-18.1374	중부	282869.13	279442.53	118.507	북천면 화정리 368-2	2023.01.1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58	35-09-40.7079	127-55-53.9226	중부	285388.13	284882.21	57.298	옥종면 북방리 220-4	2023.01.12	기타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59	35-09-41.7229	127-55-55.1502	중부	285419.70	284912.99	51.653	옥종면 북방리 897	2023.01.12	맨홀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60	35-00-55.6621	127-54-04.7723	중부	269181.52	282266.06	21.324	진교면 고룡리 350-5	2023.01.1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61	35-00-51.8934	127-53-59.8795	중부	269064.26	282143.05	25.907	진교면 고룡리 357-1	2023.01.1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62	35-00-49.4262	127-53-56.2446	중부	268987.39	282051.57	30.185	진교면 고룡리 864	2023.01.1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63	35-00-44.7262	127-53-56.6303	중부	268842.63	282062.66	33.564	진교면 고룡리 866	2023.01.1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64	35-00-44.8988	127-53-59.8114	중부	268848.68	282143.27	31.753	진교면 고룡리 373-1	2023.01.1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65	35-00-38.3308	127-53-59.9398	중부	268646.29	282148.35	34.723	진교면 고룡리 409-6	2023.01.1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66	35-00-55.9138	127-54-11.9582	중부	269190.92	282448.18	17.462	진교면 고룡리 318-12	2023.01.1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67	35-07-23.2882	127-46-15.8188	중부	281027.86	270283.84	142.715	적량면 동리 876	2023.01.1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68	35-07-24.4708	127-46-14.5232	중부	281064.05	270250.75	150.597	적량면 동리 산154-1	2023.01.1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69	35-07-26.0035	127-46-12.7554	중부	281110.94	270205.63	156.465	적량면 동리 산152-2	2023.01.1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70	35-07-27.1236	127-46-11.6754	중부	281145.24	270178.01	159.415	적량면 동리 산152-1	2023.01.1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71	35-09-17.7611	127-48-05.0210	중부	284577.28	273020.50	81.017	청암면 평촌리 555-2	2023.01.2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72	35-09-23.2762	127-47-54.4410	중부	284745.39	272751.35	83.082	청암면 평촌리 1360-1	2023.01.20	맨홀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73	35-10-30.1069	127-52-17.2071	중부	286860.85	279384.02	130.971	옥종면 청룡리 548-3	2023.01.2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74	35-10-27.9418	127-52-14.1980	중부	286793.46	279308.46	133.262	옥종면 청룡리 산1-10	2023.01.2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75	35-10-24.0945	127-52-11.3731	중부	286674.26	279238.01	150.584	옥종면 청룡리 산1-5	2023.01.26	철재	세계측지계

★ 측량성과 보관장소 : 하동군청 민원과

#### 하동군 고시 제2023-20호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 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02. 03.

하 동 군 수

- 1. 허가(승인)번호 : 2022-78호
- 2. 허가연월일 : 2022. 11. 09.
- 3. 점·사용의 목적 : 단독주택 진.출입로 이용
-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1017-1번지(인접:옥종면 청룡리 123-6번지), 4㎡
- 5. 점·사용의 기간 : 허가일로부터 5년
-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경남 하동군 옥종면 호계천로 \*\*, 황유\*

#### 하동군 제2023 - 21호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 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1. 31.

하 동 군 수

- 1. 허가(승인)번호 : 2017-53호
- 2. 허가연월일 : 2023. 1. 31.
- 3. 점·사용의 목적 : 진입도로
-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적량면 관리 960 (64m²)
- 6. 점·사용의 기간 : 2022. 10. 26. ~ 2027. 10. 25.
- 7.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145-1, 해관산업개발

#### 하동군 제2022-22호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사용 관련 법률」제5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 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02. 06.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2-9호

2. 허가연월일 : 2023. 02. 06.

3.점·사용의 목적 : 진출입로 임시사용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옥종면 종화리 562번지, 162㎡

5. 점·사용의 기간 : 2023.02.02.~ 2028.02.01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528-32번지, 이창\*

#### 하동군 제2023 - 24호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권리 의무의 이전등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2. 08.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17-53호

2. 허가연월일 : 2023. 2. 08.

3. 점·사용의 목적 : 진입도로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적량면 관리 960 (64㎡)

5. 점·사용의 기간 : 2022. 10. 26. ~ 2027. 10. 25.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하동군 사천시 향촌동881-5, 그룹진(채진\*)

구분	신청인	면적(m²)	비고
당초	경상남도 하동군 경서대로 145-1 해관산업개발 김판세	64 m²	기기이디이되
변경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881-5 그룹진 채진규	64 m²	권리의무이전

#### 하동군 고시 제2023-27호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 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2. 9.

하 동 군 수

- 1. 허가(승인)번호 : 2023-4호
- 2. 허가연월일 : 2023. 2. 9.
- 3. 점·사용의 목적 : 표지석(용주사 안내용)
-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1017-1번지(인접:옥종면 청룡리 719번지), 1.2㎡
- 5. 점·사용의 기간 : 5년
-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경남 하동군 옥종면 청룡상촌길 68-110, 박용\*

#### 하동군 고시 제2023 - 28호

##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2023. 2. 9.

하 동 군 수

1. 허가번호 : 2023-5호

2. 하천의 명칭 : 화개천

6. 점용허가 기간 : 2023. 2. 8. ~ 2028. 2. 7.

4. 점용의 목적 : 부지조성에 따른 진,출입로확보

5. 점용위치 및 면적 :하동군 화개면 탑리 851번지, 33㎡

3. 점용자 :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26-1 화개악양 농협 협동조합,임종갑

하동군 공고 제2023-179호

### 하동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 하 동 군 수

-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2. 제안 이유 : 하동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하고 노동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 3. 주요 내용 : 하동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하동군(참조 : 안전총괄과, 전화 055-880-7134, FAX 055-880-2249, e-mail en123@korea.kr)에 제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관련법			예방	및	노동안	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᠘.	世纪百	ე I	.T.									

별	ス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전 화 번 호 :							
	ما جا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하동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 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 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 내 각종 유해·위험요인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하동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하동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하동군 산업재해 예 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 4.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 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 의 내용이 포함된 하동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 수집 및 분석
  -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홍보
  -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
  - 6.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
  -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3. 산업재해 예방 모범 사례 발굴 및 홍보
  - 4. 사업장 안전수칙 및 안전문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홍보
  - 5. 사업장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 6. 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 7.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
  기 위하여 하동군 노동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 ③ 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1.「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점검
  -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신고
  -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령

## □ 산업안전보건법

-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 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하동군 공고 제2023-193호

# 하동군 하동국악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하동국악원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 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7일

# 하 동 군 수

-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하동국악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2. 제안 이유 :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기념관을 하동국악원으로 변경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운영조례는 폐지하고, 「하동국악 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 함.
- 3. 주요 내용
  - 목적(안 제1조)
  - 명칭 및 위치(안 제2조)
  - 주요 업무 규정(안 제3조)
  - 운영사항 규정(안 제4조)
  - 개관 및 휴관(안 제7조), 관람료 및 관람 시간 등(안 제8조)
  - 시설사용 허가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대상시설 및 사용료 등(안 제11조)
  - 사용료 반환(안 제12호), 사용허가의 취소(안 제 13조)
  - (부칙)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폐지

-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하동군(참조 : 문화관광과, 전화 055-880-2367, FAX 055-880-2369, 35hero@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하동국악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별표서식 포함)
  - 2. 관련법령 등 1부.

ľ	坦	ス	1
	-	_ ' '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	명) :			
C	) 주	소:			
C	) 전 화 번	호:			
	조례(규:	칙) <b>아</b> 내용	의	<i>7</i> 4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하동국악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육성과 군민의 문화수요 충족은 물론 전통국악의 계승 발전을 위해 하동국악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 1. 시설의 명칭은 "하동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 2. 위치는 하동군 악양면 하중대길 44-54 일원에 둔다.

제3조(업무) 국악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국악의 보존 및 전승발전
- 2. 유성준ㆍ이선유 선생의 판소리 선양 사업
- 3. 국악의 저변확대를 위한 연구, 교육, 공연
- 4. 국악원의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
- 5. 그 밖에 군수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운영) ① 국악원 운영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국악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악원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국악원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개관 및 휴관) 국악원의 전시실 및 감상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 1.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로 한다.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 제8조(관람료 및 관람시간 등) ① 전시실 및 감상실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②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한다.
  - 1. 음주자 등 전시품이나 그 밖에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 2. 국악원 내에서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 3.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시설사용 허가) ① 군수는 국악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으로 예약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대상시설 및 사용료 등) ① 국악원의 사용대상 시설과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②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일 2일 전까지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2. 하동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12조(사용료 반환) 시설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 1. 국악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3. 시설 사용일 3일 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경우
  -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양도 등 금지) 시설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 [별표]

# 시설 사용료[제12조 관련]

### ■ 교육실

구 분 규모 기준	시설 사	용료(원)		
十七	구 분 규모		평일	토,일,공휴일
교육실 115.6㎡	115 C m²	4시간	15,000	20,000
	110.GII	1일	20,000	30,000

- 1. 1회이용 기준시간 미만 사용한 경우 1회 이용으로 적용
- 2. 냉난방, 빔프로젝트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에 포함됨

### ■ 한옥체험관

구 분			사용료(원)		
	정원/최대	객실수	일~목	금, 토, 공휴일 앞	
한옥체험관	8인/10인	1	70,000	100,000	
	4인/6인	2	35,000	50,000	

- 1. 요금은 1일 사용시간 20시간 기준
- 2. 입실은 당일 15:00, 퇴실은 익일 11:00 기준(단, 1일 사용시간인 20시간미만 사용하더라도 1일 사용료 적용)
- 3. 추가 침구류 주문 시 1세트 당 20,000원의 추가 요금 적용 (최대인원 초과 시 입실 불가)
- 4. 퇴실시간 초과 시 사용료
  - 12:00까지 10,000원(1시간만 추가 사용 가능), 15:00이후 퇴실 시 1박 사용료 적용

하동군 공고 제2023-194호

#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 운영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일

# 하 동 군 수

-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 운영 관리 조례
- 2. 제안이유 : 군민의 안전교육 기회제공을 위해 조성한 하동군 안전 생활교육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 3. 주요 내용 : 명칭과 위치, 운영시간, 위탁운영, 수탁자 의무 등
  -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하동군 안전총괄과, 전화880-2256, FAX 880-2249, fish7@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 운영 관리 조례안 1부. 끝.

ľ	坦	ス	1
ı	=	/ \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전 화 번 호 :

○ 주 소:

의 견	비고
	의 견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 운영 관리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제고를 위해 안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성한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교육장의 명칭은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하동군 하동읍 중앙2길 6-5로 한다.
- 제3조(사업내용) 교육장은 군민의 재난 안전사고 대처 역량강화와 안전교육, 안전문화 강화로 군민의 안전을 통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한다.
- 제4조(사용료) 교육장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 제5조(휴일 및 운영시간) ① 교육장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
  - 2. 시설의 유지·관리 등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이 곤란한 경우
  - ② 교육장의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③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장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1. 전염병 질환자로 추정되는 자

- 2. 주취자
- 3.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
- 4.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5. 그 밖에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교육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장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동군 소방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장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육장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맞게 관리·운 영 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 ④ 수탁자는 교육장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의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규정, 처분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 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 2. 수탁자가 관계법령, 조례, 규칙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감독, 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
- 제11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군수는 교육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 ② 교육장의 재산·물품 및 시설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하동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감독) 군수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감독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하동	동군	안전	선활교육경	당 위탁운	2영 (	신청서	
수탁운	여			년	월	Ç	일	
	_						(	개월)
기	간			년	월	Ċ		
수탁목	적							
	단처	](법인	)명칭					
신청자	대	표자	성명		생년	월일		
	,	무소소	-		전	화		

위와 같이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을 위탁받아 운영 관리하고자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및 성명:

주소:

### 하동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위탁운영 계획서(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세출예산서)
  - 2. 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목록, 금융기관, 공공기관 증명서)
  - 3. 안전사업 실적 및 이와 유사한 사업실적 자료
  -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하동군 공고 제2023-215호

## 하동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9일

# 하 동 군 수

-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2. 제안 이유 : 저장강박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 을 느끼는 행동장애로서,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
  - 3. 주요 내용
  -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제정 목적과 '저장강박', '저장강박 의심가구' 용어를 정의함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 명시

- "저장강박"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가구, 한부모가족, 장애인가구, 기초 연금 수급가구, 영유아 보육 가구 등
- "저장강박" 지원 내용(안 제5조)
- 생활폐기물 수거지원,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23. 2. 9. ~ 2023. 3. 2.(22일간)
-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u>2023년 3월 2일까지</u>

하동군 주민행복과 ☎ 055-880-7192, FAX 880-7199, e-mail <u>kyh0422@korea.kr</u>)로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저장강박 지원 조례 제정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u>`</u>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①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 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 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한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가구
  -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 5.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자 가구

-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생활폐기물 수거지원
  - 2.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 3.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지원
  - 4.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해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하동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동군 자원봉사센터, 관련 사회단체 및 기관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1-1	.=1
무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23-216호

# 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9일

# 하 동 군 수

-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 2. 제안 이유 :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 장례지원을 함으로써 유족에 대한 재정부담 해소와 위안에 도움을 주고자 함.
  - 3. 주요 내용 :
  -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제정 목적과 '공영장례', '연고자', '저소득층' 용어를 정의함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 명시
  -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75세 노인으로만 구성되어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자 등

- "공영장례" 지원 방법(안 제5조)
  - 현금지급 원칙,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과 타 법에서 장례비를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
- "공영장례" 지원 내용(안 제6조)
- 사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수의, 상복, 병품.천막 등 장례용품
  - 지원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23. 2. 9. ~ 2023. 3. 2.(22일간)
    -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u>2023년 3월 2일까지</u>

하동군 주민행복과 ☎ 055-880-7192, FAX 880-7199, e-mail kyh0422@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모	병 : 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처	[명) :	
○ 주	소:	

$\bigcirc$	전	화	번	호	:	
------------	---	---	---	---	---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한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사망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3.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나. 연고자가 만 75세 이상 노인인 경우
-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제3호 각 목의 연고자는 사망자와 동일 주민등록세대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의 지원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화장(火葬)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장례비용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 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 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 대여비
- 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 4.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 5. 화장비용, 유품정리 비용 등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 대행기 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시신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공영장례의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장례처리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대행)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지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성별	남/	여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망자와의 관계	-[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	
사 망 자	주 소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	원인			
장례수행자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 락 처		
34T8V	장례일자		·			장례방법		
신청사유								
「하동군	· 공영장례 ㅈ	원 조례」 저	세7조제1항에 대	다라 위:	와 같	이 신청합니	l다.	
		년	월 (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	인)			
<b>하동군수</b>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원신청 내역서 3. 유류금품 목록 4.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무연고자 제외)								

(뒷면)

### 공영장례 지원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등의 수집 이용 동의서

**하동군**은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등을 수집·이용 및 제3자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공영장례 지원	3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가족관계증명 및 혼인관계증명 관련 정보, 계좌번호	공영장례 지원	3년

-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 중요·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장애등급, 생년월일	공영장례 지원	3년

- ※ 위의 중요·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공영장례지원 시신처리 위임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위 임 자	사망지 관	사와의 계		연 락 처		
(연고자)	주	소				
	국	적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사 망 자	주	소				
인적사항	국	적				
	사망'	일 자				
장례수행자(위임받은 자)			하동군수			
위 임 내 용			시신의 처리(화장	·봉안)		
위 임 사 유						

「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 처리를 위임합니다.

> 년 월 일 위임자 (인 또는 서명)

하동군수 귀하

※증명서류: 사망자와 연고자 관계 확인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 장례에 사용한 비용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 [별지 제3호서식]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												
		업 체 (기관단	명 체)					(전	拉화반	년호:		)	
신청인 (대행기관)		성 (대 표 7	명 자)				③생년 <sup>-</sup> (성					. (남/여	)
	4	주	소										
		사 망	자	-	소 : 명 : 일 :			. (님	-/여)				
장례추진 결과		장례처	리	<ul><li>장례 일</li><li>안치 경</li></ul>									
		청구금역	Щ		계		장례비용				기타	- 잡비	
		(원)	•										
지급계좌	금	융기관명	}		예금주			계좌빈	년호				

「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장례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세금계산서, 견적서(거래명세서) 포함
- 3. 시신처리(전신, 염습, 입관) 사진, 빈소 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

하동군 공고 제2023-225호

#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년 2월 9일

# 하 동 군 수

-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 제안이유: 군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각종 의견 청취 및 참여유도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 확대 및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3. 주요 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법률」법률명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2조, 제8조)
- 현재 운영되지 않는 전자우편 삭제(안 제3조, 제15조)
- 홈페이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참여행사의 구체적 명시 및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안 제14조)
-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 은 2023년 3월 3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

055-880-2172 FAX 055-880-2159, suml2002@korea.kr)에 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LJ.	-1	١,
ı	벌	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3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홈페이지 분야별 관리는 담당부서를"을 "홈페이지 분야별 관리부서는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부서"를 "시스템운영부서"로 한다.
- 제8조제1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답변에 응해야"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로 한다.
-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상"을 "보상성격의 시상금 또는 시상품을 지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포상하는"을 "지급하는 시상금이나 시상품의"로 한다.
  -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 제안제도, 우수시책홍보, 홍보행사 등에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경우

제5장(제15조)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운영부서"를 각각 "시스템운영부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 3. (생	제2조(정의) 1. ~ 3. (현행
략)	과 같음)
4. "인터넷 민원"이란 <u>「민</u>	4 「민
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	원 처리에 관한 법률
<u>률</u> _제2조 및 다른 법령	
에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	
무 중 하동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	
되는 민원을 말한다.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
운영) ① ~② (생 략)	운영) ① ~② (현행과 같
	<u>ㅇ</u>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5. 전자우편 ID 이용</u>	<u>&lt;삭 제&gt;</u>
6. • 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	③
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 운영 주관부서는	
정보화 담당부서로 하고,	
홈페이지 분야별 관리는	홈페이지 분야별 관리부
<u>담당부서를</u> 지정·운영	서는 「하동군 행정기구
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	설치 조례 시행규칙   에
부전문기관에 개발・유	<u> 준하여</u>
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	

리 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 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인터 넷시스템 운영부서의 장 (이하 "운영부서의 장"이 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 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장비 및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하 며 필요시 별도의 유지보 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 다.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 운영)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 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 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 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4
<u>시스템운영부서</u>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
호영)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
률」제12조의2에
②
「민원 처

③ (생략)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 영) ① (생 략)

②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답변에 응해야 한다.

제14조(이용자 참여 행사)
① 군수는 홈페이지 및 S
NS에서 다음 각 호의 경
우에 이용자가 참여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

	③ (현행과 같음)
제	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
	영) ① (현행과 같음)
	(2)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
	라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
	<u>수·처리하여야</u>
-1]	
셰	14조(이용자 참여 행사)
	①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
	하거나, 인터넷을 이용
	한 설문조사, 제안제도,
	우수시책홍보, 홍보행사
	등에 참여를 유도하고
	<u>자 하는 경우</u>
	②

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 서 포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포상하는 종류 · 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 페이지 또는 SNS를 통하 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 다.

제5장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제15조(전자우편서비스 제 <삭 제> 공) ① 군수는 지역정보 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 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하여 홈페이지에 전자우 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

② 군수는 전자우편서비 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이용자는 게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서 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 진다.

보상상성격의 시상금
또는 시상품을 지급
③
지급하는 시상금이나 시
<u> 상품의</u>

<삭 제>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 ② 시스템운영부서----

넷시스	스템을	보호	하기	위
하여	안전다	H책을	마란	현해
야 한	다.			

② <u>운영부서</u>의 장은 정보 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 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 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 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b>.</b>
② 시스템운영부서
<b>.</b>

하동군 공고 제2023-180호

# 2023년도 전략작물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2023년도 전략작물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하 동 군 수

- 1. 신청기간 : 2023. 2. 15. ~ 3. 31.
-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 3. 지급단가 : ha 당 50 ~ 430만 원 지급
  - (동계) 기존 논활용 직불 대상 작물은 ha 당 50만 원 지급
  - (하계) 논콩과 가루쌀 재배시 ha 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 지급
  - 이 (이모작) 동계 밀 또는 조사료 + 하계 논콩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ha 당 1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250만 원 지급
-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 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공동농업경영체(들녁경영체)(이하 '농업인 등')
- 5.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 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 서 **농업에 이용되는 논**(畓)
    - ①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 \*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 ②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u>현재 논으로 활용</u> 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다만,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 등은 제외

### 나.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0.1ha(1천㎡)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 서 전략작물 작물을 재배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①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 관리하는 자
- ②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시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
- ③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전략작물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 청장이 인정하고, "승계대상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자

### 6. 지급대상 품목

- 가. (**동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면적 및 고정시설면적 제외)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품목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 \* 다만, 감자 등 동계작물이 아닌 경우 이동식 하우스를 설치하고 재배하는 등 6월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
  - 알팔파, 청예보리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函】의 목초, 풋베기 사료직물
    - \* 사료작물: (목초) 알팔파, 오차드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토끼풀, 톨페스큐, 티모시 등 34 종 (풋베기사료) 새싹보리, 수단그라스, 자운영, 청예갈대, 청예귀리, 청예밀, 청예보리, 청예벼, 청예수수, 청예옥수수, 청예유채, 청예피, 청예호밀
- 나. (하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콩, 가루쌀 또는 하계조사료

- 가루쌀은 공공기관(국립종자원, 농촌진홍청, 한국농업기술진홍원)에서 보급하는 '바로미2'를 재배한 경우에 한함
- 논콩은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콩에 해당하는 품목
  - \* 논콩: 황태, 청태, 흑태, 선비태, 아주까리콩, 서리태, 밤콩, 콩나물콩, 풋콩, 풋청태, 약콩, 갓끈콩, 양태, 장단콩, 울콩, 발아콩, 백태, 호랑이콩, 알록콩, 서목태, 강낭콩, 동부,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등
- 하계조사료는 총체벼(청예벼), 옥수수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의 곡물 및 풋베기 사료작물로 하며, 직불금 신청 직전년도 대상농지에 벼를 재배하고, 알곡을 포함 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다. (이모작 인정기준) 논(畓)에서 동계에는 밀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6월말 이전까지 수확한 이후 동일 필지에 하계 콩이나 가루쌀 재배한 경우

### 7.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가. 제출서류

- (**필수**) 직불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 나. 제출방법 : 직불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에 제출

### 8. 신청시 유의사항

○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등에 한하고 있 으므로 허위서류 제출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 예정

기타 자세한 시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시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시거나, 농식 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시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